

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4-713호

「대구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7월 5일

대구광역시 남구청장



대구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상위법령인 「도서관법」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불부합하는 조례의 조항을 개정하려고 함

2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인 「도서관법」 및 동법 시행령 인용 조항 수정
(안 제2조, 제5조, 제6조)
- 「도서관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따라 시설등록요건 완화(안 제5조)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

3. 조례개정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4. 입법예고기간 : 2024. 7. 5. ~ 2024. 7. 25.

5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4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(참조 : 평생교육과장)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주 소 :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 38-1
(대명동, 대명어울림도서관 4층 사무실)
(우편번호 : 42469)
- 전화번호 : (053)664-3552 팩 스 : (053)664-3559
- 이 메 일 : alfs987@korea.kr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사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대구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성명(단체명) :
- 주 소 :
- 전 화 번 호 :
- 의 건 제 출

조례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건	비고
	찬성	반대		

대구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도서관법」 제2조제4호가목”을 “「도서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2항제1호가목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“작은도서관 운영자(이하 “운영자”라 한다)”란”을 ““운영자”란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활성화 될”을 “활성화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상호간”을 “상호 간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「도서관법 시행령」 제28조제2항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「도서관법 시행규칙」 제11조제4항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제5조에 따른 설치기준 등에 미달하거나 「도서관법」 제31조의2제1항 각 호”를 “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, “등록의 취소 등 조치를”를 “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작은도서관”을 “공립 작은도서관”으로, “둘 수 있다”를 “두어야 한다”로 한다.

제14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작은도서관”이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「도서관법」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공·사립도서관을 말한다.</p> <p>2. (생 략)</p> <p>3. “작은도서관 운영자(이하 “운영자”라 한다)”란 해당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·감독하며 업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, 「민법」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.</p> <p>제4조(구청장의 책무) ① (생 략)</p> <p>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<u>활성화</u> 될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<u>상호간</u>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체계가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「도서관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2항제 <u>1호가목</u>----- -----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“<u>운영자</u>”란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4조(구청장의 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활성화</u>될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<u>상호 간</u> ----- -----</p>

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설치기준 등) ① 작은도서관은 「도서관법 시행령」 제3조 별표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.

1.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여야 한다. 다만, 건물면적에 현관, 휴게실, 복도,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.
2. 열람석은 6석 이상 구비하여야 한다.
3. 도서관 자료는 1,000권 이상을 구비하여야 한다.
4.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서를 고루 구비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6조(등록 및 취소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

제5조(설치기준 등) ①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「도서관법 시행령」 제28조 제2항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.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② (현행과 같음)

제6조(등록 및 취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단, 「도서관법 시행규칙」 제11조제4항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을 매년 평가할 수 있으며, 평가결과 제5조에 따른 설치기준 등에 미달하거나 「도서관법」 제3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등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9조(운영인력) ① 작은도서관에는 운영인력으로 사서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-----

--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-----
----- 같은
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--
-----.

제9조(운영인력) ① 공립 작은도서관-----
-- 두어야 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시행규칙) <삭 제>